

일반공급 안내문

◆ 일반공급 청약 자격

구분	내용
신청자격	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세대주 및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사실이 없는 자
선정방법	-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- 미달 시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 거주자에게 공급 -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① 주택형 별 1순위 전체(기타지역 포함) 경쟁이 있는 경우,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%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 ② 주택형 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선정
유의사항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(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)

◆ 일반공급 가점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비고
① 무주택기간	32	만 30세 미만 미혼자 (또는 유주택자)	0	8년 이상~9년 미만	18	- 주민등록등본 (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~2년 미만	4	10년 이상~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~3년 미만	6	11년 이상~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~4년 미만	8	12년 이상~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~5년 미만	10	13년 이상~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~6년 미만	12	14년 이상~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~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② 부양가족 수	35	0명	5	4명	25	- 주민등록표등·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-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18세 이상~만30세 미만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(2) 만30세 이상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~9년 미만	10	- 청약통장(인터넷 청약시 자동계산 됨)
		6개월 이상~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~2년 미만	3	10년 이상~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~3년 미만	4	11년 이상~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~4년 미만	5	12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~5년 미만	6	13년 이상~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~6년 미만	7	14년 이상~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~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7년 이상~8년 미만	9					
총 배점	84	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+②+③		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오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◆ 일반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 (예비당첨 포함)	0		청약자격검수 신청서	본인	- 기본주택에 비치
	0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0	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본인	- 현 거주지, 거주기간, 세대원 등 확인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 및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
	0		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본인	- 세대원 정보 확인(상세)
	0	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본인	- 거주 기간 확인 (과거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0		출입국 사실증명원	본인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- 대조 기간: 주민등록생년월일 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 11. 19.)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0		주민등록표 등본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 등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)
	0		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해당자	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0		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	본인	- 만 30세 이전 혼인으로 혼인기간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0		복무확인서 및 청약등급순위 확인서	본인	-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속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

① 부양가족 인정 (경우1.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한 경우)

0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전체포함' 발급 (*3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)
0	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0	출입국 사실 증명원	피부양 직계존속	-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. -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 최근 3년 이내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의 내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제출 기간: 주민등록생년월일 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 11. 19.)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
② 부양가족 인정 (경우2.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)

0	주민등록표 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전체포함' 발급 (*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)
0	가족관계 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)
0	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발급 시 "상세" 발급 된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)
0	출입국 사실 증명원	피부양 직계비속	-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. -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의 해외체류기준 미 충족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 (만 30세 미만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(만 30세 이상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- 제출 기간: 주민등록생년월일 -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 11. 19.)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
제3차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0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- 본인발급분 -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
	0	위임장	청약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0	신분증, 인장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- 재외동포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,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0	건물등기부 등본/ 건축물 대장	해당 시	- 건축물 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[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]
	0	무허가건축확인서	해당 시	-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[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]
	0	소형차기주택 증명 서류	해당 시	-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[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]
	0	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해당 시	-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
0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시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(금융결제원 발급)	

- * 상기 제출서류(신청자 구비서류는 최초모집공고일(2020년 11월 19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*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- * 상기 제출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- *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.
- *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

*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재요류·미기재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